

전주지방법원 2016. 9. 7 선고 2015나8745(본소), 2015나8752(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16. 9. 7 선고 2015나8745(본소), 2015나8752(반소)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14가단132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1. 망 B의 소송수계인 C

2. D

3. E

4. F

5. G

6. H

변론 종결 2016. 6. 15.

판결 선고 2016. 9. 7.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14가단132(본소), 2014가단3162(반소) 판결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별지 2 목록 기재 지분비율에 따라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전주시 덕진구 I전 165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14, 13, 12,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6m²(이하 "이 사건 다툼 있는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4. 3. 24.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초 2003. 3. 25.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가, 당심에서 위와 같이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반소 :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다툼 있는 부분에 있는 ① 길이 4.9m, 높이 2.4m 규모의 대문 포함 길이 33.5m, 높이 1.4m 규모의 담, ② 가로 5.4m, 세로 3.1m, 높이 2.7m 규모의 창고용 가건물, ③ 화단 15.6m² 및 화단 내 식재된 철쭉나무 2그루, 사철나무 1그루, 단풍나무 1그루, 엄나무 1그루, 장미 5그루, ④ 높이 4m 정도의 감나무와 목련나무 각 1그루 등 일체의 물건을 철거 및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원고는 2014. 1. 1.부터 이 사건 다툼 있는 부분을 인도하는 날까지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 C에게 월 28,875원, 피고 D에게 월 4,950원, 피고 E에게 월 3,300원, 피고 F에게 월 3,300원, 피고 G에게 월 2,888원, 피고 H에게 월 2,888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본소 :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반소 :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 B(이 사건의 본소 공동피고 및 반소 공동원고였으나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사망하여 처인 C이 소송수계하였다. 공유지분 112분의 42), 망 J(이 사건의 본소 공동피고 및 반소 공동원고였으나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망 J에 대한 본소 및 망 J의 반소가 모두 취하되었다. 공유지분 112분의 28), 피고 D(공유지분 112분의 12), 피고 E(공유지분 112분의 8), 피고 F(공유지분 112분의 8), 피고 G(공유지분 112분의 7), 피고 H(공유지분 112분의 7) 앞으로 2013. 11. 8.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14. 11. 20. J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K 앞으로 2014. 9. 24.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4. 11. 20. K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망 B 앞으로 2014. 11.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5. 7. 20. 망 B의 지분 전부(공유지분 112분의 70 = 최초 공유지분 112분의 42 + K로부터 양수한 공유지분 112분의 28)에 관하여 망 B의 소송수계인 C 앞으로 2015. 5.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위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2013. 11. 8. 이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는 ① 길이 4.9m, 높이 2.4m 규모의 대문 포함 길이 33.5m, 높이 1.4m 규모의 담, ② 가로 5.4m, 세로 3.1m, 높이 2.7m 규모의 창고용 가건물, ③ 화단 15.6㎡ 및 화단 내 식재된 철쭉나무 2그루, 사철나무 1그루, 단풍나무 1그루, 엄나무 1그루, 장미 5그루, ④ 높이 4m 정도의 감나무와 목련나무 각 1그루 및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다툼 있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와 붙어 있는 전주시 덕진구 L 전 73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관련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35. 9. 23. T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1974. 3. 25. U 앞으로, 1975. 6. 7. V 앞으로, 1977. 3. 4. M 앞으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1983. 3. 26. M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1983. 3.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관련 토지에서 1987. 6. 9. 전주시 덕진구 N 도로 43㎡가, 1995. 1. 17. 전주시 덕진구 ○ 창고용지 200㎡가 분할되어 위 토지의 면적이 181㎡가 되었으며, 2004. 11. 9. 위 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이하 "이 사건 분할 후 관련 토지"라고 한다)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분할 후 관련 토지 위에 대지면적 181㎡로 하는 1층 조적조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5. 4. 17. 사용승인을 받아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해 오고 있으며, 이 사건 다툼 있는 부분을 이 사건 주택의 마당 부분으로 사용하고 있다.

바. 이 사건 다툼 있는 부분에 관하여, 2014년 기준 월 임료 상당액은 46,2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8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전라북도본부 전주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제1심 감정인 P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U가 1974. 3. 25. 이 사건 분할 전 관련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지목을 임야에서 전으로 변경하고 밭으로 개간하여 점유하였는데, 이 때부터 인접한 이 사건 다툼 있는 부분까지 밭으로 점유하여 왔다.

2) U로부터 V, M, 원고가 순차로 이 사건 분할 전 관련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위 1)항과 같은 U의 이 사건 다툼 있는 부분도 그 일부로 인식하여 그에 대한 점유도 승계하였다.

3) U가 1974. 3. 25.부터 이 사건 다툼 있는 부분을 이 사건 분할 전 관련 토지의 일부로 알고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고, 원고는 순차로 위 점유를 승계받아 20년이 경과한 1994. 3. 24.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4)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다툼 있는 부분 중 별지 2 상속지분표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각 1994. 3. 24.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보통의 경우 등기할 때에 그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를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다192 판결, 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2011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U가 1974. 3. 25.경 U 명의로 등기를 마친 이 사건 분할 전 관련 토지 외에 그에 인접한 이 사건 다툼 있는 부분까지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취득시효완성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2016. 9. 6.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증거로 1985년 9월, 1995년 5월, 2003년 3월 촬영된 이 사건 토지의 항공사진을 제출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기존의 증거에 위 증거들을 더하더라도 U가 1974. 3. 25.경 이 사건 분할 전 관련 토지 외에 이 사건 다툼 있는 부분까지 점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증거를 제출하기 위한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구소는 당심에서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피고 D, 피고 E, 피고 F의 각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며,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 C, 피고 G, 피고 H의 각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봉규

판사김소연

판사유동균

별지